안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-40호

2026년 제1회 안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

2026년 제1회 안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3일

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임용직위	임 용 직 급	선발 인원	임용 기간	주 요 업 무
만 안 구 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 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(개방형 4호)	1명	2년	◦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추진 ◦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,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◦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 ◦ 시민건강증진, 구강건강,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◦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 및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◦ 여성·노인·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·증진 ◦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◦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◦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◦ 그 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

※ 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○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○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
○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○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○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자격

○ 기본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▸ 주소지 · 성별 · 연령 제한 없음
- 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〉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
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〈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〉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▸ 필수요건을 충족하고, 아래 ① ~ ⑥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1. 임용자격요건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. 필수요건</td><td>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나.
경력
요건</td><td rowspan="2">(관련학과[1])
학 력
기 준</td><td><석사학위 이하인 자>
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<박사학위 소지자>
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자격증
기 준</td><td>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공무원
경력기준</td><td>④ 관련분야[2]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⑤ 관련분야[2]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민간
경력기준</td><td>⑥ 관련분야[2]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※ 관련학과[1] : 의학, 보건 등 임용예정 업무 관련 학과
※ 관련분야[2] :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분야
*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</td></tr>
</table>

4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형식요건심사

-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 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

○ **2차 시험(면접시험) :**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

-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

⇒ 전문가적 능력, 전략적 리더십, 변화관리능력, 조직관리능력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요건 심사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○ **접수기간 :** 2026. 10. 6. ~ 10. 13. < 주말제외 5일간 >

○ **접 수 처 :** 안양시청 총무과(3층) 인사팀

○ **접수방법**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▸ **방문접수**

- 접수시간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
※ 접수 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

- 응시원서 제출 前 **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**

※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[4급 상당 : 1만원]

※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해당되는 경우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증명서 지참 필요)
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증명서 지참 필요)

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(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필요)

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)

-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
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
▸ **등기우편 접수** **※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**

- 우편주소 : 우)14053 /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
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
※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
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

- 우편봉투 겉면에 '안양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-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
 ※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-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가능. 접수마감일 이후 우편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

○ 시험일정 : 안양시 홈페이지 (www.anyang.go.kr) 공고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 시행 예정일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6. 10. 19(월) 전·후	2026. 10. 22(목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2026. 10. 27(화) 전·후

※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, **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'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' 공고문을 통해 확인 요망**

※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청 홈페이지(www.anyang.go.kr) 고시/공고란(채용공고)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
6. 제출서류 ※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, 띠지 등 사용 금지

○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1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▸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**※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[4급 상당 : 1만원]**

○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2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3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4호)

○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(별지서식 5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(별지서식 6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, 자격요건 중복표시 가능)

○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

(별지서식 7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, 기관 자체서식 활용 가능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)
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**경력(재직)증명서는**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, 연락처를 필히 기재
- 제출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**본인이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**하여야 함. **[근무기간, 근무형태(전일·시간제), 직위(급),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]**
-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[별지서식 7호]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(인사담당자 작성, 기관 관인 날인 필수)하거나 경력증명서 상에 **인사담당자가 내용 기재 및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** 추가 제출 가능
- **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**,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(ex.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근무경력 2년으로 인정)
- *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**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할 수 있으며, 이때 검증을 위해 ②폐업사실증명서, ③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, ④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(①~④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)

 ※ 증빙서류를 통해 관련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

- 국세청 홈텍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접속 →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자현황' 클릭 → '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' 클릭 → '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'에서 발급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

- 국세청 홈텍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접속 →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자현황' 클릭 → '즉시발급 증명' 클릭 → '소득금액증명' 클릭 →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〈관련 문의 : 국세청 (☎126)〉

○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▸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, 정부24(http://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

○ 학사(전문학사 포함)학위 이상 전체 졸업(재학)증명서 각 1부

▸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

▸ 학력기준 응시자의 경우 학과명칭이 공고문 상 관련학과와 상이한 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(별지서식 8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※ 응시원서 제출 시 **원본지참** 제시 **(해당자만 제출)**

▸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.

○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**(해당자만 제출)**

▸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

○ 외국어능력,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 **(해당자만 제출)**

○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**(해당자만 제출)**

(별지서식 9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 ※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

○ **자격요건 검증 동의서**(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) **1부**

(별지서식 10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※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7. 임용신분 및 보수수준

○ 신 분

-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·승진·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-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임기(약정기간) 동안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의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 유지

○ 복 무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 적용

○ 보수수준

- 경력직공무원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 등 적용
- 일반임기제공무원 : 직급별 연봉하한액(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)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

직 위	연봉등급	상한액(천원)	하한액(천원)
만안구보건소장	개방형 4호	-	70,490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보수 외 수당 지급

※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8. 기타사항

○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○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·미비,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▸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▸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- ▸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,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,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○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○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○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
○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▸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 (☏031-8045-2118)

만안구보건소장(개방형직위) 직무수행요건 명세서

Ⅰ. 기본사항

1. 소속기관	2. 직위명	3. 직 급
안양시	만안구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(개방형 4호)

4. 주요업무내용	비중
1.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및 추진	10
2.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,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	10
3.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· 관리 ·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· 관리	10
4. 시민건강증진, 구강건강, 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	10
5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	10
6.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·증진 및 난임의 예방 및 관리	10
7.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· 증진	10
8.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	10
9.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	10
10.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	10

5. 관련분야
○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분야

Ⅱ. 직무수행요건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1. 임용자격요건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가. 필수요건</td><td>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나.
경력
요건</td><td rowspan="2">(관련학과[1])
학 력
기 준</td><td><석사학위 이하인 자>
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<박사학위 소지자>
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자격증
기 준</td><td>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[2]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</td></tr>
<tr><td>공무원
경력기준</td><td>④ 관련분야[2]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⑤ 관련분야[2]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민간
경력기준</td><td>⑥ 관련분야[2]에서 2년 이상 근무·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※ 관련학과[1] : 의학, 보건 등 임용예정 업무 관련 학과
※ 관련분야[2] : 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의무·약무·간호·보건진료 분야
*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</td></tr>
</table>

III.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

2. 능력요건
① 전문가적 능력 ⅰ)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ⅱ)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 ⅲ)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② 전략적 리더십 ⅰ)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ⅱ)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ⅲ)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③ 변화관리 능력 ⅰ)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ⅱ)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도출하는 능력 ⅲ)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
④ 조직관리 능력 ⅰ)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노력 ⅱ) 업무개선능력 ⅲ) 자원활용능력
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ⅰ) 대국민 공감대 형성능력 ⅱ)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능력 ⅲ)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능력
3. 특별요건
① 자격증 : ■무 □유 ② 외국어 : ■무 □유 ③ 정보화 능력 : ■무 □유 ④ 기타 특별요건 ■무 □유